

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1. 25(금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항공운항과	담당자	• 과장 김상수, 서기관 김봉진, 주무관 강승주 • ☎ (044) 201-4259, 4279, 4270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**닥터헬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환자 응급구조 등 긴급운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.**

- 응급의료헬기가 항공안전법에 의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- ‘긴급항공기는 국가기관항공기와 달리 출동 후 경로를 바꾸려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와 관련해서는 항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국가기관등항공기 및 긴급항공기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
  - 실제 응급의료헬기가 비행 중 운항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선으로 관제기관이나 운항관리사에 통보하는 절차로 승인을 갈음하고 있어 긴급운항에 지장이 없습니다.
- 또한 닥터헬기가 “국가기관등항공기”로 지정되면 안전감독책임이 항공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“소관 행정기관의 장”으로 이관하게 되어
  - 소수의 응급의료헬기에 대한 안전감독체계를 “소관 행정기관의 장”이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1.25 동아일보) >

- ◆ 골든타임 깎아먹는 닥터헬기 규제
  - 닥터헬기의 비행계획 변경 시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‘탁상 규제’
  - “닥터헬기를 국가기관등항공기 분류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”는 설득력 없어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김봉진 서기관(☎ 044-201-42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